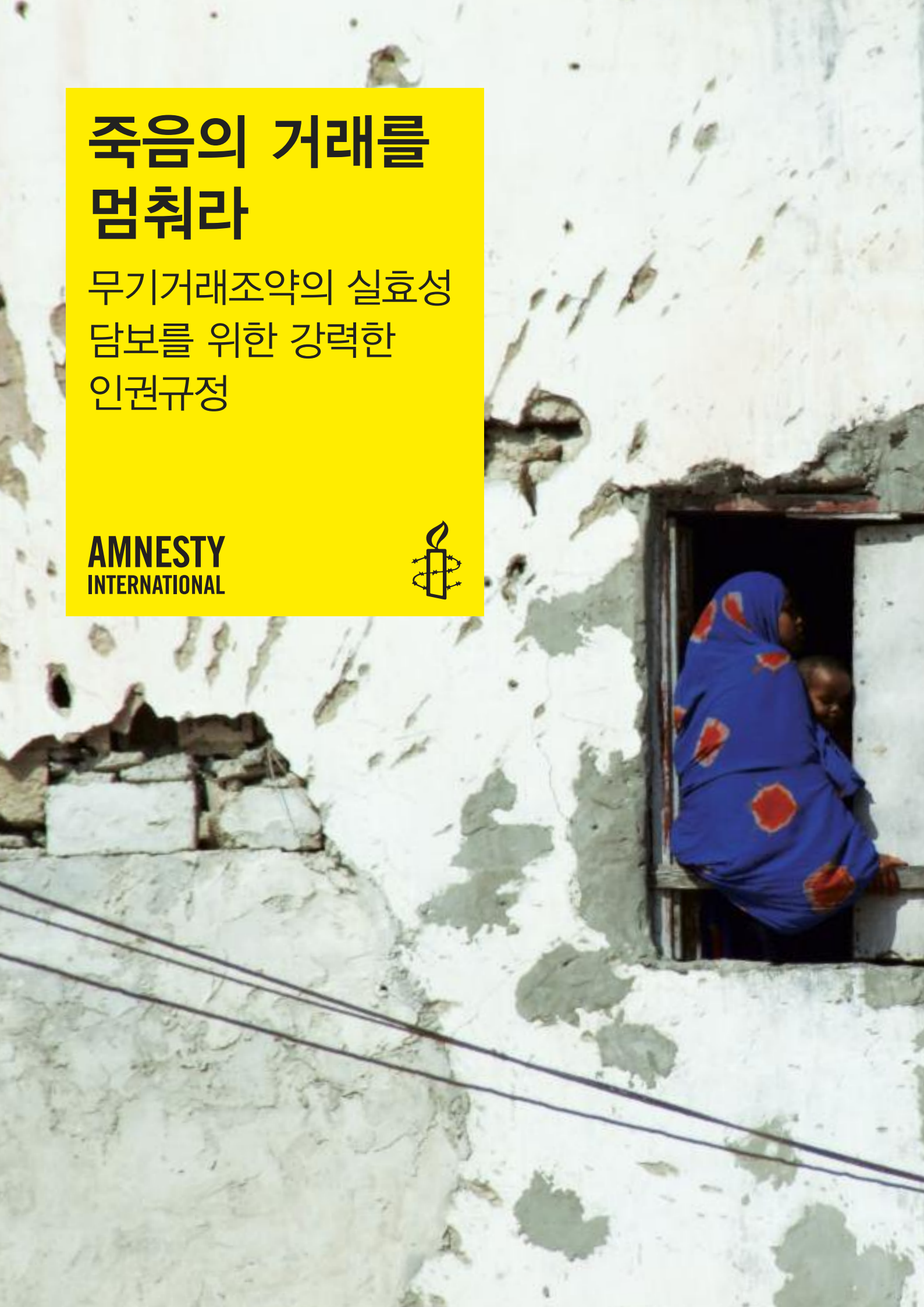


죽음의 거래를 멈춰라

무기거래조약의 실효성
담보를 위한 강력한
인권규정

AMNESTY
INTERNATIONAL



무기거래조약(Arms Trade Treaty)에 필수적인 강력한 인권 규정

표지사진:

한 어머니와 아이가 폭격을 피해 숨어 있다.

2007년 2월, 소말리아 모가디슈

© Private

세계 곳곳에서 이루어지는 **무책임한 무기이전**으로 인해 사람들의 삶이 파괴되고 있다. 재래식 무기의 국제거래에 대한 형편없는 규제 때문에 예측 가능한 종류의 무장폭력에서 매년 수 십만 명이 생명을 잃어간다. 또한 “죽음의 거래”는 수십만이 넘는 사람들이 다치고, 강간당하고, 실랑민이 되고, 빈곤의 덫에 빠지게 한다. 국제법에 명시되어 있는 권리들 - 경제·사회·문화·시민·정치적 권리들 - 을 짓밟으면서 말이다.

효과적인 무기거래조약(Arms Trade Treaty)은 사람들의 생명과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조약을 말하는 것이다. 각국이 국제법과 모범적 기준을 따르는 한, 안보, 법집행, 자위권 행사를 위해서 적법하게 무기를 판매하고 취득하고 보유할 국가의 권리는 무기거래조약 하에서 보호될 것이다. 하지만 진정한 안보를 위해서라면 국가들은 무기가 국제인도법이나 국제인권법의 중대한 침해에 사용될 실질적 위험이 있는 경우, 그러한 무기이전을 금지시켜야 한다. 국제인도법과 국제인권법에 대한 존중은 이미 각국에 부과된 보편적 의무이다. 또한 효과적인 무기거래조약은 테러공격, 성에 근거한 폭력(Gender-based violence), 폭력범죄, 조직범죄 등 무장폭력을 심화시킬 수 있는 실질적 위험이 있는 경우 무기 이전을 예방할 수 있는 조약이어야 한다. 무기의 이전으로 인해 빈곤 감소나 사회·경제 발전이 심각히 저해될 수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현재 무기거래조약에 관한 논의에서 일부 국가들이 위와 같은 국제법에 근거한 규정을 조약에 포함시키는 것에 반대하고 있으며, 무기거래조약의 통제대상이 될 무기 목록을 되도록 적은 수로 제한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시도는 진정한 안보에 기여할 수 있는 강력한 규정을 가진 조약을 제정하려는 대다수 국가들의 노력을 조롱하는 것이다.

이 문서는 위험성 평가(재래식 무기의 국제 이전이 국제인도법과 국제인권법의 중대한 침해에 사용될 위험성에 대한 평가)의 근본적 영역들을 집중적으로 다룰 것이다. 이 문서는 무책임한 무기유입으로 인해 심화되고 있는 전쟁범죄나 조직적이고 만연한 중대한 인권침해의 피해자인 개인이나 공동체의 경험과 이야기를 담고 있다. 또한 이 문서는 각각의 사례연구를 통해, 무기를 이전하는 국가들이 엄격한 위험성 평가를 활용하여 어떻게 인권침해를 가중시킬 무기유입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지를 보여줄 것이다. 또 그러한 인권침해에 사용된 무기와 장비의 종류를 드러냄으로써 진정한 안보를 위해서라면 무기거래조약의 통제목록에 그러한 무기들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을 예증할 것이다.

각국은 건별 심사를 통해 무기가 국제인도법이나 국제인권법의 중대한 침해에 사용될 실질적 위험이 있을 경우 무기이전이 승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중대한 침해는

다음과 같은 특성으로 규정할 수 있다

규모와 지속성

경향성을 띠는 인권침해가 있는가? 또 그러한 인권 침해가 조직적이거나 제도적이라는 증거가 있는가? 그러한 인권침해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가, 혹은 그러한 인권침해가 광범위하다고 보기 어려운가?

혹은

속성과 만연성

제시된 최종사용자가 해당 무기를 가지고 국제법에 의해 확립된 인권(시민·정치적 및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중대한 부분을 침해한 적이 있는가?

실질적 위험은

다음과 같은 특성으로 규정할 수 있다

제시된 최종사용자가 중대한 인권침해를 저지르는데 해당무기를 사용할 것이라고 합리적인 수준의 예측이 되는 경우, '확실'하지는 않지만 '단순한 의혹' 수준보다는 높은 위험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실질적 위험'은 '단지 무기 오용의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안보 목적의 적법한 무기이전을 방해할 수도 있는 기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위험성 평가에 필요한 주요 질문들

- 제시된 최종사용자의 과거 및 현재의 기록과 관련해 공정하고 신뢰할만한 증거들이 국제인도법이나 국제인권법의 중대한 위반에 해당 무기가 사용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가? 그러한 위반사항에 대한 증거는 믿을만한가?
- 그러한 인권침해는 독립적인 사건인가, 아니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고 만연한 사건인가? (최종사용자의 인권의무 준수 태도 및 문제의 범위와 심각성과 관련해)
- 과거의 인권침해나 새로운 형태의 인권침해가 지속되는가? 해당국 정부는 그러한 최종사용자에 의한 인권침해 재발을 예방하기 위해 현실적인 조치를 취했는가? 해당국 정부가 가해자를 효과적으로 수사하고 기소했는가?



아이들이 기니의 수도 코나크리(Conakry) 교외지역인 함달라예(Hamdallaye)에 있는 군인들을 그린 그림. 2007년 이 지역에서 치안군이 평화로운 시위대에 공격을 가한 사건이 있었다.

사례 1 / 기니: 과도한 무력사용 및 불법 살해

“저는 카팔라(Kafala)하고 우리 동네에 서있었어요. 아이들 몇 명이 같이 놀고 있었죠. 5시쯤, 빨간 베레모를 쓴 사람들이 랜드크루저를 타고 나타났어요. 아이들은 그 사람들을 놀리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자 그 차량이 도망치는 아이들을 향해 돌진했고, 카팔라가 차에 치여서 땅바닥에 쓰러졌어요. 카팔라는 얼굴을 땅에 데고 엎드려 있었어요. 그러자 빨간 베레모를 쓴 사람이 총을 꺼내더니 카팔라에게 두 번이나 총을 쏘습니다. 그 아이는 어깨 사이와 엉덩이에 총을 맞았어요. 도망치던 다른 아이도 총에 맞았습니다. 카팔라의 시체는 나중에 돈카(Donka)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14세 소년 카팔라 바(Kafala Ba)의 친척은 기니의 수도인 코나크리(Conakry)에서 대통령경호대원이 근거리에서 총을 쏘서 카팔라를 죽였던 사건을 이렇게 회상했다.

2007년 1월과 2월, 기니 군대는 파업과 시위에 대한 대응으로 수도 코나크리 등 곳곳에서 시위대를 공격했다. 십수년간 계속되어 온 폭력 진압의 반복이었다. 시위자들 뿐 아니라 아이들을 포함해 주변에 있던 사람들까지 총격을 받고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고, 일부는 맞으면 즉사할 수도 있는 거리에서 총에 맞기도 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코나크리에서 맘바(Mamba) 장갑차를 탄 군인들이 평화로운 시위대들에게 실탄과 최루탄을 발포했던 사건을 기록한 바 있다. 기니 전역에서 130여명이 사망했으며 수 천명이 부상을 입었다. 치안군은 자의적 체포, 성폭행, 약탈 사건 등에 연루되어 있었다.

유엔 세관데이터(UN custom data)에 따르면, 2003년에서 2006년 사이에 기니에는 약 7백만 달러어치의 소형무기용 탄약이 프랑스, 포르투갈, 스페인에서 공급되었다. 하지만 이 데이터만으로 이 탄약공급의 최종사용자가 누구였는지는 알 수 없었다. 2007년 초, 코나크리에서 사용되었던 장갑차는 2003년 영국 무기 회사가 대부분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남아프리카 제조업체가 “국경수비” 목적으로 공급한 것이었다.

무기거래조약의 강력한 인권규정이 적용된다면

실질적 위험

기니의 치안군은 1998년 대선, 2000년 지방선거, 2001년 국민투표, 2004 ~ 2008년의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광범위하게 중대한 인권침해를 저지른 기록을 가지고 있다.

기니 치안군은 이 기간 지속적으로 공급되었던 소형무기와 내부치안용무기, 군장갑차를 사용해 시위자들을 폭력적으로 진압했다.

중대한 침해

이 기간 동안 불법살해, 시위대와 야당 당원에 대한 과도하고 무차별적인 무력 사용 등의 중대한 인권침해가 지속적으로 보고되었다. 일부 인권침해 사건들은 국가 최고위급 당국자의 지시와 지원을 받는 등 조직적인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무기거래조약의 인권 규정이 있었다면, 기니 정부가 치안군의 인권침해 사건을 수사하여 가해자를 기소하고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시행할 때까지는 각국이 기니 치안군에 무기를 공급하지 않도록 했을 것이다.

사례 2 / 과테말라: 여성에 대한 무장폭력과 불처벌



여성들이 과테말라의 높은 여성 살인사건 발생률과 정부의 대책마련 미비에 항의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2005년 8월 13일, 변호사를 꿈꾸던 19세 대학생 클라우디나 베라스퀘즈 파이즈(Claudina Velásquez Paiz)의 시체가 발견되었다. 시체에서는 총상과 정액이 발견되었다. 하지만 뒤이은 수사에는 심각한 결함이 있었다. 중요 증인들에 대한 신문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주요 용의자들은 총기 사용여부를 탐지할 수 있는 검사도 받지 않았다.

클라우디나의 아버지에 따르면 “수사관은 원래 하도록 되어있는 사건 현장 수사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피해자의 배경과 상황에 대한 일종의 편견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클라우디나가 당시에 샌들을 신고 목걸이와 배꼽링을 착용했다는 사실과 발견된 장소 때문에 그녀는 수사할 필요가 없는 사망자로 분류되었다.”

2005년 11월에 생명 범죄에 대한 특별검사실 수장이 이 사건을 넘겨받았다. 2006년 10월, 과테말라 인권옹무부 부장 사무소는 클라우디나 사건에서 “당국이 생명권과 안전, 적법절차를 존중·보장할 의무 이행에 실패했다.”라고 밝혔다.

과테말라는 더 이상 무력분쟁이 진행되는 지역이 아니지만 무기는 넘쳐난다. 확인되지 않은 채 해외로부터 공급되는 소형무기는 심각하고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부추긴다. 이러한 광범위한 인권침해는 무장 살해사건과 무장성폭력을 적절히 수사하고 기소하는 것에 대한 당국의 고의적 태만으로 조장되기도 한다.

무기거래조약의 강력한 인권 규정이 있다면 무장폭력 상황에서 민간인이나 치안군이 불법살해 등에 사용하지 않을 종류의 무기(대형 군용 무기 등)를 적법하게 공급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소형무기의 국제적인 유입을 차단 할 수 있을 것이다.

과테말라의 약 180만개의 화기(이중 90%는 미등록 화기다)는 이 지역의 공포와 범죄 만연이라는 분위기 형성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 살인피해자 남성 중 80%, 여성 중 69%가 총기로 살해당한 사람들이다. 2001 ~ 2006년 사이에만 최소 2,200명 이상의 여성과 소녀들이 살해되었다. 이들 중 많은 수는 강간이나 고문 등 혹독한 신체적 폭력을 당한 뒤 살해되었다. 국가인권옹부즈만이 밝힌 바 있듯이 “여성의 경우는 살해되기 전에 더 많은 고통을 받는다는 것이 다른 점이다.”

과테말라에서는 이러한 살해 사건 중 단 1% 정도만이 유죄판결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살해사건에 대한 고의적 수사 미비와 이에 따른 낮은 유죄판결률은 이러한 범죄에 대한 불처벌의 문화를 만들어내는데 일조하고 있다. 이는 특히 여성의 경우에 있어서 더욱 그렇다고 할 수 있는데, 국제앰네스티는 살해 사건에 대한 당국의 대응 정도가 피해자의 성별에 따라 달라지는 경향을 밝혀냈다.

국가가 효과적인 수사과 기소에 나서지 못하고 불안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다른 폭력적 문제가 발생되기도 한다. 치안세력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간주되는 이들에 대해서 고문이나 초법적처형을 자행하는 것이다.

유엔 세관데이터(UN custom data)에 따르면, 체코공화국, 독일, 이탈리아, 슬로바키아, 남한, 터키는 2004년에서 2007년 사이에 약 7백만 달러어치의 권총을 과테말라에 공급했다. 2009년 3월에 새롭게 도입된 “무기 및 군수품 통제법안”에 따라 과테말라내의 화기통제가 엄격해졌으며 불법화기와 탄약의 밀매가 범죄화되었다. 하지만 기존에 유통되던 많은 수의 불법 소형무기가 눈에 띄게 감소한 것은 아니며, 소형무기를 사용한 살해사건에 대한 불처벌 풍토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무기거래조약의 강력한 인권규정이 적용된다면

중대한 침해

과테말라에는 살인, 성폭행, 불법살해 등 소형무기를 사용한 인권침해가 광범위하게 퍼져있다.

실질적 위험

과테말라 정부는 민간인과 군에 의해 자행되는 이러한 중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현실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했으며, 이러한 인권침해에 대한 불처벌의 분위기가 팽배하다. 가해자 중 많은 이들이 불법적으로 습득한 화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들이 사용하는 대부분의 무기는 무허가 시장에서 얻은 것이다. 신뢰할만한 추정치에 따르면 이러한 무허가 시장의 규모는 꽤 크며 공급도 활발한 편이다. 외국에서 수입된 외국산 무기가 많은편이며, 사실 과테말라의 내수 소형무기 생산량은 많지 않은 편이다. 과테말라에는 경찰과 군이 사용하는 5.56밀리 탄약만이 생산되고 있으며, 이중 일부는 무허가 시장으로 유출되기도 한다.

무기거래조약의 강력한 인권규정이 있었다면 건별 평가를 통해 과테말라 내에서 이런 무기가 불법 시장으로 전용되어 중대한 인권침해를 자행하는 자들의 손에 들어갈 실질적 위험이 있는 이상, 권총과 탄약을 민간 공급자에게 수출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위험은 과테말라 당국이 유통되고 있는 상당량의 불법 무기들을 제거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기 전까지는 계속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또 소형무기를 사용한 불법 살해 사건들이 충분히 수사되고 가해자가 기소될 때까지 말이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과테말라 치안세력의 국제인권법 준수에 대한 지속적인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는 과테말라 군에 소형무기와 탄약이 수출되지 않을 것이다. 당국이 군에 의한 불법살해 사건을 충분히 수사하고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보이지 않는 이상 말이다.

하지만 무기의 종류가 민간에서 발생하는 무장폭력이나 군에 의한 불법살해에 사용되는 무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무기거래조약의 인권 기준들이 여타 적법한 무기의 공급을 막지 않을 것이다. 예를 들어 정규군의 적법한 자위권 행사를 위해 필요한 대형 군사무기체계 도입, 대마약 작전을 위해 필요한 순찰용 선박의 수입 등이 제한되지는 않을 것이다.

사례 3 / 미얀마: 자의적 체포, 과도한 무력사용, 불법살해



2007년 9월, 군인들이 양곤 중심가에 있는 시위현장에 도착하고 있다.

“5시쯤에 당국이 전화선을 끊었습니다. 9시 10분쯤 되자 군용트럭을 타고 군인들이 사원의 정문을 부수고 들어왔습니다. 군인들은 들어오자마자 승려들을 구타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문을 부수고 들어온 다음에는 군인들이 문을 발로 차면서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사원에 들어온 순간부터 우리를 무차별적으로 구타했습니다. 승려들이 저항하지 못하게 아예 선제공격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우리들에게 벽을 마주보고 서라고 지시했고 지시에 따르지 않는 승려들을 봉으로 구타했습니다.”

우 툴라반타(U Thilavantha)의 동료의 증언. 우 툴라반타는 2007년 9월 26일 사원을 습격한 군인들에게 살해당했다.

2007년 9월 25 ~ 29일, 1988년 민주화 항쟁 이후 가장 큰 규모의 민중 시위가 발발한 것에 대한 대응으로 미얀마 군은 사원을 습격하고 평화적인 시위자들을 공격했다. 수천 명이 체포되었고 최소 31명의 사망자와 수백명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실제 사망자 수치는 100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국제앰네스티는 이 진압작전에서 국가 안보요원이나 이들의 지시를 받은 이들이 고무탄환, 최루탄, 실탄을 평화로운 시위대에 발포했다는 것을 확인했다. 일례로 양곤시 탐웨 제 3고등학교의 학생인 파잉 소에(Paing Soe)와 마웅 튠린 카우(Maung Tun Lynn Kyaw)가 9월 27일 시위현장에서 총에 맞아 사망한 사건을 들 수 있다. 현장의 목격자들은 탄환이 군트럭과 고가도로에서 발포되었다고 증언했으며 군인들이 시위대의 지도자들을 의도적으로 조준하고 있었다고 증언했다.

무기거래조약의 강력한 인권규정이 적용된다면

중대한 침해

2007년 9월의 사태는 단발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미얀마 군부의 군·경비·경찰이 오랫동안 중대한 인권침해를 자행해왔다는 기록이 충분하며 유엔은 이를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것이라고 규정했다.

실질적 위험

이제껏 기록된 인권침해의 양상에는 초법적 처형, 강제실종, 고문, 강제노동, 소년병 징집, 일부 경우 전쟁범죄와 인륜에 반한 범죄 등이 포함된다.

국제앰네스티는 미얀마 군요원들이 정부의 승인 하에 저지른 ‘인륜에 반한 죄’ 등의 미얀마에서 자행된 인권침해의 양상이 광범위하고 조직적이고 중대하다는 점에서 미얀마에 대해 유엔 무기금수조치 부과할 정당성이 입증된다고 판단한다. 하지만 그와 같은 금수조치가 없는 현 상황에서는 무기거래조약의 인권기준이 미얀마 군에 무기와 장비를 공급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미얀마 당국이 그러한 무기들이 중대한 인권침해에 사용되지 않을 것임을 입증할 수 있을 때까지는 말이다.



2007년 9월 28일, 미얀마 치안군이 시위대에 사용한 수류탄 발사기

효과적인 무기거래조약을 위한 포괄적 통제범위

인권의 완전한 보호를 위해서 무기거래조약이 모든 종류의 군사·치안·경찰용 무기와 장비도 다루어야 한다. 현재 일부 국가들이 주장하듯이 단지 8개의 영역-유엔 재래식무기 등록대상 7종과 소형무기·경무기-만을 조약의 통제범위로 삼아서는 안된다. 예를 들어 현재 유엔재래식무기 등록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군용 수송 차량과 다용도 차량은 군사작전과 치안작전에 모두 사용되고 있다. 진압작전에 미얀마 군부는 중국제 군용트럭을 사용했으며, 이 트럭 수백여대가 2005년 이래로 사원을 습격하기 위한 수송임무 등에 사용되었다.

무기거래조약은 반드시 치안 장비와 군수품들을 통제해야 한다. 이것들은 군사용으로 특정된 장비는 아닐 수 있지만 경찰·치안 요원들에게 광범위하게 보급된다. 2007년 양곤에서 치안

군은 고무탄환, 최루탄, 실탄을 평화적인 시위대들에게 발포했다. 당시 이들이 사용한 화기 중 일부는 싱가포르에서 제작한 수류탄 발사기와 같은 종류였다.

미얀마의 사례는 무기거래조약이 무기생산설비와 장비들까지 통제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보여준다. 2007년 진압에서의 인권침해에 사용된 소형무기들 중 많은 수는 미얀마가 자체 생산한 것이다. 미얀마의 소형무기 생산은 웨스트저먼(West German)사가 1950 ~ 1960년 사이에 무기생산설비를 공급하면서 가능해지기 시작했다. 제인스 인텔리전스 리뷰(Jane's Intelligence Review)지에 따르면 1998년 미얀마는 돌격 소총과 탄약 생산 공장을 공급받았다. 알려진바에 의하면 이 설비는 싱가포르 기업이 설계·건축하고 이스라엘이 자문을 제공했다.

인민방어국민회의(National Congress for the Defence of the People, CNDP) 무장단체 요원이 동부 콩고민주공화국 동부의 고마(Goma)의 북쪽 마을인 루슈루(Rutshuru) 인근에서 로켓추진수류탄발사기를 들고 가고 있다. CNDP 반군과 콩고민주공화국 정규군과의 교전으로 최소 22만명이 실항민이 되었다.



사례 4 / 소말리아: 자의적 체포, 초법적 처형, 전쟁범죄



무장한 에티오피아 군인들이 모가디슈에서 “테크니컬”이라 불리는 군용트럭에 탑승해 있다. 2007년 5월.

“저는 2007년 10월 16일에 소말리아에 있었습니다. 제가 거기 간지 나흘째 되던 날에 마을이 에티오피아 군인들에게 점령되었습니다. 에티오피아 군인들은 저를 포함해 41명을 체포했습니다. 우리들은 군기지로 끌려갔습니다. 거기서 군용 트럭들과 15대 이상의 테크니컬(경무기를 탑재한 지프)을 보았죠. 에티오피아군인들과 함께 일하던 소말리아인이 저를 신문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왜 여기에 있는 것이냐?’는 질문에 우린 그저 우리들의 집에서 살고 있었을 뿐이라고 대답했죠.

신문을 끝내자 우리 중 9명이 끌려가서 트럭에 태워졌습니다. 저는 이 9명이 에티오피아로 끌려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엔 그들 중 2명이 수염이 긴 불법학자여서 그랬던 것 같아요. 저를 포함해서 나머지 32명은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그중 11명이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 뒤에서 뛰어가고 있어서 그들이 쓰러지는 것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먼저 도망친 사람들이었거든요. 저는 그날로 이 나라를 떠나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나중에 11월 22일에 목이 베인 5구의 시체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중 2명은 참수되었습니다. 그 지역이 아예 에티오피아 군인들로 점거된 상황이었거든요.”

수도 모가디슈의 바카라 시장 인근에 살던 자카리아(Zakaria, 41세)의 증언. 자카리아는 소말리아에서 에티오피아 군인들에게 자의적으로 체포되었다.

소말리아에는 1992년부터 유엔 무기금수조치가 부과되었다. 하지만 지난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 나라에 만연했던 전쟁범죄와 중대한 인권침해의 가해자인 양측 분쟁 당사자들은 지속적으로 무기를 공급받았다. 분쟁에 참여하고 있는 일부 군부대는 무기금수조치가 적용되지 않는 국경 밖에서 무기를 공급받았다.

일례로 2006년 말부터 2009년 초까지 에티오피아 정부는 이슬람법정연합(Islamic Courts Union, ICU)을 몰아내기 위해서 소말리아의 과도연방정부(Transitional Federal Government, TFG)와 손을 잡고 소말리아에 침공해 군사작전을 수행했다. 유엔 세관데이터(UN custom data)에 따르면 이 당시로부터 2년전까지 에티오피아는 중국, 체코공화국, 이스라엘, 북한, 러시아로부터 상당한 양의 군사 무기를 수입했다. 군사작전이 진행되는 와중에 에티오피아는 4,800만 달러 어치의 무기를 중국, 불가리아, 남한으로부터 수입했다고 보고했다. 에티오피아군과 과도연방정부군이 소말리아에서 국제인권법과 국제인도법을 중대하게 침해했고, 유엔 소말리아 모니터링 그룹(UN Monitoring Group on Somalia)이 에티오피아 군대가 소말리아 영토 내에 상주하는 것 자체를 유엔 무기금수조치 위반으로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미국정부는 2009년에 무장단체의 공격이 재개되면서 과도연방정부군에게 40톤 가량의 무기를 공급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유엔 모니터링 그룹은 이슬람법정연합(ICU)와 알-샤바(Al-Sahbaab) 부대 등 소말리아 무장단체들이, 당시 성장세를 보이고 있던 무기 시장에서 무기를 획득했으며, 무장단체와 소말리아 무기 시장 모두 에리트레아, 에티오피아, 예멘 등의 국가들에서 무기를 공급받은 것으로 봤다. 이 단체들은 획득한 무기들을 사용하여 국제인도법과 국제인권법의 침해를 자행했다. 또 지역에 만연한 무장폭력 역시 계속되어 소말리아인들의 보건과 식량 접근권을 차단했다. 더구나 2008년 인도주의 기구 활동가들을 노린 고의적 총격들로 인해서 이러한 보건·식량 접근권의 차단은 더욱 악화되었다.

무기거래조약의 강력한 인권규정이 적용된다면

중대한 침해

유엔 소말리아 전문가패널과 모니터링 그룹은 2002년 이래로 에티오피아, 에리트레아, 예멘 등의 국가들이 소형무기·경무기, 탄약, 차량, 기술 등을 소말리아 내전에서 국제법을 중대하게 위반한 당사자들에게 공급했다는 신뢰할만한 의혹을 반복적으로 제기했다.

실질적 위험

분쟁 양측의 군대는 오랜 기간 동안 불법살해, 자의적 구금, 고문 등 중대한 인권침해를 광범위하게 자행해왔다. 또 민간 지역에 대한 무차별적 폭격과 고의로 민간인을 표적으로 삼는 등의 국제인도법의 중대한 위반도 보고되어왔다.

무기거래조약의 인권규정이 적용되었다면 소말리아에서 자행된 전쟁범죄, ‘인륜에 반하는 죄’, 기타 중대한 인권침해 등의 가해자인 모든 군대(유엔 무기금수조치가 부과된 지역의 군대인지 여부에 상관없이)에 무기나 관련 물자의 직·간접적 공급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이전되는 무기들이 국제인도법이나 국제인권법의 중대한 침해에 사용되지 않거나 소말리아의 분쟁 양 당사자에게 공급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해내지 못하는 이상 말이다.

효과적인 무기거래조약을 위한 포괄적 통제범위

국제인도법과 국제인권법 준종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무기거래조약이 현실적으로 모든 종류의 무기와 장비를 통제해야 한다. 단순히 유엔 재래식무기 등록 대상과 소형무기를 통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소말리아의 예를 들더라도 그렇다. 자카리아의 증언에 나왔던 것처럼, 분쟁 양 당사자는 “테크니컬”이라 불리는 차량을 흔히 사용한다. 이 차량은 보통 트럭이나 경차량에 중기관총 내지는 23/39미리 대공포를 탑재하여 지상의 목표물을 공격한다. “테크니컬”을 구성하는 비무장 운송차량, 다용도 군차량, 대공포 중 어떤 것도 유엔 재래식 무기 등록대상이 아니다.

사례 5 / 콩고민주공화국: 불법살해와 전쟁 범죄에 사용되는 무기들



© AP/PA Photo/Jerome Delay

콩고민주공화국 동부의 고마(Goma)지역 북쪽에 있는 키바티 실항민 수용소에 있는 콩고 여성이 비를 피해 뛰어가는 모습. 2008년 11월. 수용소는 콩고민주공화국 정규군과 인민방어국민의회(National Congress for the Defence of the People) 무장단체와의 교전으로 실항민이 된 이들을 위해서 설치되었다.

“거기에는 노인과 아픈 사람 하나만이 있었습니다. 그 군인은 노인의 이름을 묻고는 돈을 요구했습니다. 노인에게 돈이 없었기 때문에 군인은 그를 곳간 구석으로 밀쳐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테오필레와 저에게 침대에 누우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때 이제는 죽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군인은 여러 번 총을 쏘았죠. 제머리와 심장 부근으로,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요.

정말 기적적으로 첫번째 총알은 제 목을 스치고 지나갔고, 두번째 총알은 제 팔을 관통했습니다. 군인은 곧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그때가 한낮이었습니다. 테오필레도 총에 맞았고, 그의 몸은 침대위 비틀려져 있었습니다. 그는 흐느끼다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곧 숨이 끊어졌습니다. 저도 온몸이 피범벅이었고 곧 의식을 잃었습니다.”

무장단체, 콩고민주주의대회(Rally for Congolese Democracy, RCD-Goma) 소속 군인의 공격에서 살아남은 사람의 증언. 북 키부, 부람바(Buramba), 2004년 12월.

콩고민주공화국에서는 1996년 이래로 반복되어온 잔혹한 분쟁의 양측 당사자들이 조직적으로 국제인도법과 인권법을 유린해왔다. 2003년에 콩고민주공화국 동부의 무장단체들과 2002년 콩고민주공화국 평화협정의 당사자가 아닌 무장단체들을 대상으로 뒤늦게 부분적으로 부과되었던 유엔 무기금수조치는 분쟁을 종결 시키려는 의도에서 부과된 것이었다. 하지만 인권침해의 가해자들에게 무기가 공급되는 것을 뿌리뽑으려던 이 시도는 실패했는데 이 지역의 무장단체의 지원자들과 공급책의 무책임한(그러나 엄연히 합법적인) 무기이전 때문이었다.

콩고민주공화국 정부군과 콩고와 외국의 무장 단체들은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저질렀으며, 이 중 일부 경우는 불법살해, 강간, 소년병 징집 등의 전쟁범죄에 해당되는 것도 있다. 분쟁의 초기 단계에서 르완다와 우간다 군대도 역시 민간 거주 지역에 대한 무차별 폭격, 비무장 민간인에 대한 초법적 처형 등의 전쟁범죄를 자행했다. 국제사법재판소(ICJ)는 2005년 판결에서 1998년과 2003년 사이 우간다 군이 민간인을 고문했고 적 전투원과 교전시 민간인 보호에 실패했고, 민족 갈등을 선동했으며 소년병의 훈련에 관여했다고 밝혔다.

분쟁 양 당사자는 또한 각각 무장단체들에게 장비를 지원했는데, 그러한 무장단체들은 종종 민족 정체성에 근거해 민간인 마을에 대한 조직적인 공격을 수행했다. 새롭게 시작된 평화프로세스의 일환으로 성급히 진행되었던 무장단체의 정규군으로의 통합으로, 무장단체들은 고유의 지휘체계를 해체하지도 않고, 전쟁범죄나 중대한 인권침해의 가해자들을 걸러내기 위한 심사도 하지 않은 채 새 정부의 무기들에 대한 접근권을 확보하게 되었다. 국제인도법과 국제인권법의 중대한 침해의 결과로 콩고민주공화국 주민들은 계속적으로 적절한 보건권 등의 경제사회적 권리를 박탈당했다. 아직 150만명 이상이 콩고민주공화국 동부에서 실항민 신세로 지내고 있다. 무단체들은 고의적으로 보건소나 병원을 지속적으로 공격하고 약탈했다. 보건소와 병원들이 집단 강간의 피해자들과 부상자들로 넘쳐나는 상황에서 말이다.

유엔 무기금수조치는 인접국으로부터의 무기 이전과, 정부군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무기 밀매 등으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위반되었다. 게다가 콩고민주공화국, 우간다, 르완다의 정부군은 알바니아, 보스니아와 헤르체코비나, 중국, 체코공화국, 러시아연방, 세르비아 등의 국가로부터 합법적으로 무기를 공급받았다. 이 군대들이 유엔 무기금수조치의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무기금수조치 부과 이후 몇몇 국가에 육상이나 공중을 통해 운송된 무기는 그 국가들의 무기금수조치의 대상 세력에 대한 군사 지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무기거래조약의 강력한 인권규정이 적용된다면

중대한 침해

1997년 이후로 국제앰네스티를 비롯한 여러 단체들이 콩고민주공화국 동부에서의 광범위한 전쟁범죄와 인권침해 사례들을 기록해왔다. 이러한 인권침해와 전쟁범죄는 콩고민주공화국, 우간다, 르완다 정부군과 이들의 지원을 받는 무장단체들에 의해서 광범위하게 자행되었다.

실질적 위협

르완다와 우간다 군이 철수하면서 이들이 직접 자행하는 인권침해 행위는 종식되었지만, 유엔 전문가패널은 2003년 이래로 르완다, 우간다, 콩고민주공화국 군대가 지원하는 무장단체로의 (여전히 인권침해를 자행하고 있는) 무기 이전과 군사지원이 있었다고 여러 차례 보고했다.

이러한 증거들을 놓고 볼 때 무기거래조약의 인권기준은 콩고민주공화국 동부지역에 부과된 유엔 무기금수조치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강화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무기거래조약 내의 인권규정은 각국이 인권법과 국제인도법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군대에 대한 무기 공급을 예방할 것이다. 심지어 그 군대가 무기금수조치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말이다. 이러한 규정 하에서 무기를 이전하려면, 공급하려는 무기가 콩고민주공화국 동부지역의 군대나 무장단체에 전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하게 입증해야 할 것이다.

지금 행동하세요

국제앰네스티는 모든 국가의 정부들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 강력한 무기거래조약(ATT)에 대한 지지입장을 가지고 교섭에 참여하고, 교섭 과정을 신속히 마무리 지을 것
- 무기거래조약 하에서, 건별로 국제 무기 이전이 평가되고 어떤 경우에 무기 이전이 금지되는지를 명확히 규정하는 구속력 있는 규정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할 것
- 무기거래조약 하에서 마련되는 구속력 있는 규정들에 유엔 헌장과 현존하는 국제법상 의무(국제인권법과 국제인도법 등)가 반영되도록 할 것

국가는 국제법의 관련 원칙(국제인도법, 국제인권법, 유엔과 기타 국제무기통제 기준 등)에 부합하는 한에서 적절한 안보·법 집행·자위상의 필요에 따라 무기를 매매, 습득, 보유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와 기업과 개인들은 너무나도 자주 원칙을 깨뜨려 비극적이고 파국적인 결과를 불러 일으킨다.

만약 무기가 국제인도법이나 국제인권법의 중대한 침해에 사용될 실질적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 국가들은 무기를 이전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그러한 무기 이전이

무장폭력, 성에 근거한 폭력, 조직 범죄를 촉진시키거나 테러 공격, 빈곤 경감, 사회·경제 개발의 심각한 저해로 이어질 실질적 위험이 있는 경우에도 무기 이전을 허가해서는 안된다.

다음의 예문을 참조해 한국의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여러분의 의견을 전달하세요.

외교통상부장관께

매년마다 수십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무책임한 무기거래의 직·간접적인 결과로 생명을 잃어갑니다. 이제는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 그러한 죽음의 거래를 중단시키기 위해 조속히 행동에 나설 때가 되었습니다. 현재 유엔 총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무기거래조약(Arms Trade Treaty)은 교섭 풀린 국제 무기 거래를 바로 잡을 수 있는 효과적인 도구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2012년 제정을 목표로 논의되고 있는 이 조약이 정말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효과를 가지려면 몇 가지 필수적인 조건을 만족시켜야 할 것입니다. 나는 다음과 같은 점이 무기거래조약 교섭과정에서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우리 정부에 촉구합니다.

1. 포괄적인 조약의 통제범위

모든 종류의 무기(모든 재래식 무기와 그 부품과 부분품, 탄약, 폭발물, 군사·치안·경찰용으로 의도된 이중용도물품)와 모든 종류의 거래종류(수입, 수출, 재수출, 경유, 임시 이전, 환적, 재이전, 임대, 면허생산설비 및 기술의 이전, 차관, 원조, 혹은 모든 종류의 현물이나 채권)가 조약의 통제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할 것

2. 황금률의 삽입

국제인도법과 국제인권법의 중대한 침해에 사용될 실질적 위험이 있는 경우 무기 이전을 금지하는 규정이 조약에 명시적으로 포함되도록 할 것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되는 강력한 조약의 탄생을 볼 수 있도록 한국 정부가 교섭 과정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합니다.

[편지보내실 주소] (우) 110-787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37 외교통상부장관 앞

AMNESTY
INTERNATIONAL



국제앰네스티는 전세계 150여 개국 250만명 회원이 인권 보호를 위해 캠페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비전은 모든 사람이 세계 인권 선언과 다른 국제 인권 기준에 명시된 모든 인권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정부나 정치적 이데올로기, 경제적 이익 및 종교로부터 독립된 단체이며, 회원들의 회비와 일반 시민들의 후원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발행: 2009년 10월
한국어판 발행: 2010년 12월
문서번호: ACT 30/006/2009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서울시 종로구 광화문
우체국 사서함 2045호
www.amnesty.or.kr

